

## 화순군이장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### 심사 보고

#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. 24

다. 상정일자 : 2003. 1. 24

(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규문

나. 개정사유

- 농촌공동화 현상으로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소마을(15호 이하 마을)을 통·폐합하고
-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해 마을규모가 현저하게 커진 4개 마을 (화순읍 신기리, 대리4구, 계소리 1구, 벽라리 1구)을 분구함으로써 달라진 마을 수에 따라 이장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2조 이상의 정원수 조정(현행대비 감 19)

- 현행 : 355명

- 개정안 : 336명

- 조정내용

· 과소마을 통·폐합에 따른 23명 감

· 화순읍 과대마을 분구에 따른 4명 증

#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장 헌법)

- 본 개정 조례안은 15호 미만의 과소 마을을 통·폐합하고 과대화된 마을은 분구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임. 별다른 의견 없음
-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#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 6. 심사결과

“수정의결”

- 부칙 “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을 “이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과대마을(화순읍 신기리, 대리, 계소리, 벽라리)의 이장정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수정의결

첨 부 :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)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.

읍 면 별	법 정 리 명	정 원	비 고
합 계		336	
화 순 읍	교 리	2	
	향 청 리	1	
	만 연 리	6	
	신 기 리	2	
	훈 리	1	
	동 구 리	1	
	유 천 리	3	
	일 심 리	5	
	다 지 리	2	
	광 덕 리	4	
	삼 천 리	4	
	이 십 곡 리	2	
	대 리	6	
	강 정 리	1	
	벽 라 리	3	
	감 도 리	3	
	계 소 리	4	
	도 웅 리	2	
	세 량 리	1	
연 양 리	2		
내 평 리	1		

읍 면 별	법 정 리 명	정 원	비 고
한 천 면	서 태 리	2	
	주 도 리	3	
	앵 남 리	2	
	수 만 리	2	
춘 양 면	모 산 리	2	
	금 전 리	1	
	한 계 리	2	
	정 리	2	
	가 암 리	2	
	오 음 리	3	
	반 곡 리	2	
	평 리	1	
	정 우 리	1	
	동 가 리	2	
변 천 면	고 시 리	1	
	석 정 리	1	
	화 림 리	3	
	대 신 리	3	
	회 송 리	2	
	양 곡 리	1	
	용 곡 리	1	
	월 평 리	3	
	가 동 리	1	
	변 천 리	1	
	산 간 리	1	
	가 봉 리	1	
	용 두 리	1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	우 봉 리	1	
	부 곡 리	3	
청 풍 면	풍 암 리	1	
	한 지 리	2	
	어 리	1	
	세 청 리	2	
	대 비 리	1	
	백 운 리	1	
	청 뚉 리	1	
	이 만 리	1	
	신 석 리	2	
	신 리	2	
이 양 면	차 리	2	
	금 능 리	1	
	강 성 리	3	
	용 반 리	1	
	장 치 리	1	
	목 곡 리	2	
	옥 리	1	
	품 평 리	3	
	오 류 리	4	
	이 양 리	2	
	율 계 리	1	
	송 정 리	2	
	초 방 리	2	
	매 정 리	2	
	연 화 리	1	
	구 례 리	1	
	쌍 봉 리	1	
	증 리	1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농 주 면	남 정 리	2	
	정 남 리	1	
	석 고 리	1	
	잠 정 리	1	
	내 리	1	
	판 영 리	1	
	천 덕 리	2	
	만 인 리	2	
	광 사 리	1	
	백 암 리	2	
	만 수 리	2	
	원 지 리	1	
도 곡 면	대 곡 리	3	
	효 산 리	2	
	월 곡 리	3	
	쌍 옥 리	2	
	평 리	1	
	덕 곡 리	2	
	신 성 리	2	
	천 암 리	1	
	원 화 리	2	
	신 덕 리	3	
	미 곡 리	2	
	죽 청 리	2	
도 암 면	운 월 리	2	
	도 장 리	1	
	벽 지 리	2	
	정 천 리	1	
	원 천 리	3	
	천 태 리	2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이 서 면	지 월 리	2	
	등 광 리	1	
	대 초 리	1	
	용 강 리	3	
	호 암 리	2	
	우 차 리	1	
	봉 하 리	1	
	왕 정 리	1	
	행 산 리	1	
북 면	서 리	1	
	월 산 리	1	
	창 랑 리	1	
	야 사 리	4	
	보 월 리	2	
	인 계 리	2	
	영 평 리	1	
	안 심 리	2	
	갈 두 리	1	
	임 곡 리	1	
	옥 리	2	
	서 유 리	2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동 복 면	수 리	1	
	노 치 리	1	
	용 곡 리	2	
	독 상 리	1	
	칠 정 리	2	
	천 변 리	1	
	유 천 리	1	
	신 율 리	3	
	가 수 리	3	
	안 성 리	1	
남 면	연 월 리	3	
	읍 애 리	1	
	구 암 리	2	
	연 둔 리	2	
	한 천 리	1	
	사 평 리	5	
	대 곡 리	2	
	검 산 리	2	
	운 산 리	1	
	원 리	2	
	벽 송 리	2	
	장 전 리	2	
	절 산 리	2	
	사 수 리	2	
	주 산 리	1	
	복 교 리	1	
	남 계 리	1	
	유 마 리	1	
	나 산 리	1	
	용 리	2	
	내 리	3	

읍 면 별	이 명	정 원	비 고
동 면	백 룡 리	2	
	언 도 리	2	
	서 성 리	2	
	국 동 리	1	
	청 궁 리	1	
	마 산 리	1	
	무 포 리	2	
	경 치 리	2	
	복 암 리	3	
	오 동 리	3	
	천 덕 리	3	
	장 동 리	2	
	운 농 리	3	
	옥 호 리	3	
	대 포 리	3	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읍 면	법정리명	정 원		
		현	행	개정안
화순읍	신기리	1		2
	대리	5		6
	벽라리	2		3
	계소리	3		4
	앵남리	3		2
	수만리	4		2
한천면	정우리	2		1
춘양면	대신리	4		3
	양곡리	2		1
	용곡리	2		1
이양면	율계리	2		1
능주면	만인리	2		1
도암면	지월리	3		2
	창랑리	2		1
	인계리	3		2
	영평리	2		1
이서면	안심리	3		2
	송단리	3		2
	다곡리	2		1
	용곡리	3		2
	안성리	2		1
북면	사수리	3		2
동북면	남계리	2		1
	서성리	3		2
남면	청궁리	2		1
	천덕리	4		3
동면				